



고용노동부

부산지방고용노동청통영지청

수신 삼성중공업(주) 거제조선소 대표 귀하
(경유)

제목 임시건강진단 및 수시건강진단 실시 계획 여부 조사

1. 귀 사업장의 무궁한 발전 및 무재해를 기원합니다.
2. 귀사에서 2020년 피부질환 의심 성분인 테트라에틸렌펜타민(TEPA, CAS no, 112-57-2)을 함유한 무용제 도료를 취급한 근로자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명령에 의한 건강진단 실시 계획을 아래 서식에 의거 2021.02.05.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

○ 아 래 ○

사업장명	소재지	검진대상 인원	검진병원	검진기간(예정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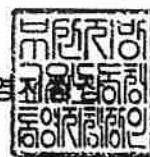
3. 또한 2020년 테트라에틸렌펜타민(TEPA) 미함유 무용제 도료를 취급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자체적으로 피부증상 확인 후, 수시건강진단 실시여부를 조사하고자 하오니 아래 서식에 의거 2021.02.05.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○ 아 래 ○

사업장명	소재지	무용제 도료 관련 피부증상자 발생여부	수시검진 계획 여부	비 고
		있음(명)/없음	있음(일정)/없음	

끝.

부산지방고용노동청통영



근로감독관 김순갑 산재예방지도 전결 2021. 2. 3.
과 과장 황영근

협조자

시행 산재예방지도과-1028 (2021. 2. 3.) 접수

우 53016 경상남도 통영시 죽림1로 69 (산재예방지도과) / <http://moel.go.kr/tongyeong/>

전화번호 055-650-1941 팩스번호 055-650-1980 / ksk6308@korea.kr / 비공개(6)

"모든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"